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㊐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655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/ 팀원 문성현 [6585]/E-mail: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4254호

시행일자 2024. 2. 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4. 1. 29. ~ 2024. 2. 4.)

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2. 이에, 2024년 1월 29일 ~ 2월 4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
1	2024.1.30.	고시아님	2024년(2주기 2차) 고혈압·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참여기관 신청 안내
2	2024.1.30.	제2024-13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- 가온·가습용 호흡회로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
3	2024.1.30.	제2024-14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- 가온·가습용 호흡회로 신설
4	2024.1.31.	제2024-15호	「치료재료 급여.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-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및 삭제
5	2024.1.31.	제2024-16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- 신생아 체온유지용 폴리에틸렌백 급여기준 신설
6	2024.1.31.	제2024-17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- 위내풍선삽입술용' 일부 개정, '신생아 체온유지용 폴리에틸렌백'란 신설
7	2024.2.1.	제2024-18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- 위내 풍선 삽입술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, 프로칼시토닌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,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변경
8	2024.2.1.	제2024-19호	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 -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, 럭스터나주 유형코드 신설
9	2024.2.1.	제2024-20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 - 급여기준 신설 5항목, 변경 4항목
10	2024.2.1.	고시아님	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(신플랙스정)
11	2024.2.2.	고시아님	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(이소탐연질캡슐)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http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